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-1511호

용산역전면 제1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5호(2006.01.19.)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-45호(2007.09.13.)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-2호(2013.01.10.)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-85호(2013.08.22.)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4-107호(2014.10.0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91호(2015.04.0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339호(2015.10.29.)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-144호(2017.11.16.)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-163호(2017.12.14.)로 변경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-92호(2018.08.0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1-111호(2021.06.04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-135호(2018.10.1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용산역전면 제1-1구역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.
2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17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1. 12. 17. ~ 2021. 12. 31.(14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02-2199-7402)

다.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요지

-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용산역전면 제1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정비구역 위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-708 외 5필지
- 정비구역 면적 : 4,751.1㎡
- 사업시행자 : 한국자산관리공사
-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~2023.04.30.
 - 당초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9개월, 변경: 사업시행인가일~2023.04.30.
- 건축계획
 - 대지 면적 : 2,743.10㎡
 - 건폐율(용적률) : 53.56%(923.47%)
 - 연면적 : 40,261.44㎡
 - 층수 및 높이 : 지하7층/지상30층, 최고높이 142.6m
 - 용 도 : 국방·군사시설(숙박시설, 업무시설, 판매시설)

라. 관계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)

마. 금회 변경내용

-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
당초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9개월, 변경: 사업시행인가일~2023.04.30.

바. 기타사항

- 1) 공람서류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02-2199-7402) 또는 용산역 전면1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(자산관리공사, 02-3420-5652)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공람서류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기관(부서)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